

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. 7. 29 선고 2013가단4406(본소), 2013가단7993(반소) 판결
[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등 · 소유권이전등기절차]

재판경과

대법원 2015. 11. 27 선고 2015다45772(본소), 2015다45789(반소) 판결

수원지방법원 2015. 7. 3 선고 2014나33267(본소), 2014나33274(반소) 판결

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. 7. 29 선고 2013가단4406 판결

전 문

원고(반소피고)A

피고(반소원고)B

변론 종결 2014. 4. 29.

판결 선고 2014. 7. 29.

주 문

1. 원고(반소피고)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.
2. 원고(반소피고)는 피고(반소원고)에게 안성시 C 대 193m²에 관하여 2011. 4. 17.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3.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원고(반소피고)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본소 : 피고(반소원고, 이하 '피고'라 한다)는 원고(반소피고, 이하 '원고'라 한다)에게, 안성시 D 대 193m²(이하 '이 사건 토지'라 한다) 지상 시멘트벽돌조 시멘트 기와지붕 단층주택 94.45m²(이하 '이 사건 주택'이라 한다)를 철거하고, 위 대지 193m²를 인도하며, 27,416,707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, 2013. 7. 23.부터 위 대지 193m² 인도완료일까지 연 3,083,175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.

반소 : 주문 제2항 기재와 같다.

이 유

1. 기초사실

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.

가. 이 사건 토지 현황 및 소유자

1) 이 사건 토지는 2003. 8. 1. 안성시 E 대 92m²와 병합되어 현재의 193m²가 되었는데, 분할 전 101m² 상태에서 1985. 3. 23.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F이 수원지방법원 안성등기소 1985. 9. 13. 접수 제21038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.

2) 원고는 위 F의 부인으로 2003. 8. 30. 증여를 원인으로 수원지방법원 안성등기소 2003. 9. 6. 접수 제34255호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.

나. 이 사건 주택의 현황 및 소유자

1) 이 사건 주택은 이 사건 토지의 지상에 존재하고 있으나, 안성시 G 지상의 건물인 것처럼 1975. 8. 6.경 H(원고의 시아버지)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.

2) 그 후 이 사건 주택은 I, J-K, L(피고의 어머니), M(피고의 처) 등을 거쳐 1991. 4. 17.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.

2. 원고의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

이 사건 토지 지상에 피고가 소유하면서 점유하고 있는 이 사건 주택이 존재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바와 같으므로,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,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방해하고 있는 이 사건 주택을 철거하고, 위 토지를 원고에게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.

3. 피고의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

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1. 4. 17.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시효로 취득하였으므로 이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반소로 구함과 동시에 원고의 본소청구에 대하여 항변하고 있다.

살피건대, 앞서 본,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피고가 1991. 4. 17.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에 비추어, 피고는 그 무렵부터 위 주택을 소유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였다고 할 수 있고,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평온,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므로, 2011. 4. 17.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피고의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피고는 이를 원인으로 하여 원고에게 위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다.

한편, 원고는 피고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점유는 소유의 의사로 하는 자주점유가 아닌 비소유자로서의 점유 즉, 타주점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, 원고의 시어머니 N이 L에게 이 사건 토지의 사용을 승낙한다는 취지로 1978년경 작성된 갑 제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점유가 소유로 의사로 하는 자주점유가 아니라고 단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피고의 자주점유 추정을 번복할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.

그렇다면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1. 4. 17.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.

4. 결론

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본소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, 피고의 반소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안동철